**세 법**

**2/16**

**제1교시**

**【문제 1】**(40점)

**(물음 1)**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가나(주)의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대손충당금 및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인정이자 계산 제외)을 하시오.

답안은 과목, 세무조정내용(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순으로 작성하시오.

1. 대손충당금 전기이월액은 170,000,000원(세법상 한도초과액 50,000,000원 포함)이고 당기 중 대손충당금의 감소액은 40,000,000원으로 동 금액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감소액 15,000,000원(부도일 2005년 4월 29일)과 거래처에 대한 채권 임의포기액 10,000,000원 그리고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에 의해 포기한 15,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기 중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50,000,000원이다. 회사의 접대비는 이미 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2. 당기말 현재 채권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외상매출금 | 10,000,000,000원 |
| 받을어음 | 5,000,000,000원 |
| 관계회사대여금 | 1,300,000,000원 |

3. 회사의 직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기말잔액은 8,000,000,000원이었으며 직전기 대손실적률이 1.5%에 달하여 회사는 직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시 대손실적률에 의하여 한도계산을 하였다.

**(물음 2)**

중소기업이고 의류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나다(주)의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재고자산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답안은 과목, 세무조정내용(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순으로 작성하시오.

1. 회사는 전기까지 재고자산평가를 위하여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였으나 당기부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할 세무서에 2005년 11월 1일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기말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2. 제품에 대하여는 진부화에 대비하여 평가충당금 20,000,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차대조표에는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차대조표상 제품, 상품과 원재료의 내역 및 평가방법별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  |  |
| --- | --- | --- | --- |
| 과목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 제품 | 230,000,000 | 250,000,000 | 240,000,000 |
| 상품 | 120,000,000 | 105,000,000 | 115,000,000 |
| 원재료 | 40,000,000 | 55,000,000 | 50,000,000 |

주) 제품에 대한 총평균법 평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이후의 잔액이나,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임.

4. 기말 재고실사시 상품과 관련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족금액 3,000,000원(시가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물음 3)**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다라(주)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답안은 과목, 세무조정내용(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순으로 작성하시오.

1.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은 115,000,000원(세무상 한도초과액 70,000,000원 포함)이며, 당해연도 1분기에 관계회사인 A(주)로부터 일부 직원이 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원(부인액 18,000,000원 포함)을 현금으로 인계받았다. 회사는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A(주)로부터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당해연도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금액은 총 45,000,000원으로 이 금액에는 A(주)로부터 전입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A(주)로부터 전입한 종업원에 대하여 회사는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하였으며, 각 회사별 근무기간에 따른 금액은 A(주) 근무기간에 따른 금액 8,000,000원이고 다라(주)에 근무한 기간에 따른 금액은 4,000,000원이다.

**세 법**

**제1교시**

**3/16**

2. 퇴사자 중 일부가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퇴직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35,000,000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당해연도 중 지급한 총급여액은 780,000,000원으로 동 금액에는 연차수당 지급액 2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당해연도 7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회사는 신입사원을 2월 중에 채용하고 있는 바 동 신입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액은 70,000,000원이며 당해연도 중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당해연도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180,000,000원이며 이는 당해연도말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일치한다.

**(물음 4)**

마바(주)는 해외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2년 전부터 가지고 있으며, 당해연도 중 각 자회사의 소유현황 및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5사업연도(2005. 1. 1 ～2005. 12. 31)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자회사명 | 소재지 | 지분율 | 법인세액 | 소득금액 | 배당금  수령액 |
| 맨유  (주) | 영국 | 25% | 30,000,000 | 300,000,000 | 45,000,000 |
| 홍콩  (주) | 홍콩 | 25% | 20,000,000 | 120,000,000 | 20,000,000 |
| 미국  (주) | 미국 | 15% | 55,000,000 | 600,000,000 | 10,000,000 |

주1)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은 해외자회사가 당해연도에 소재지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및 소득금액이다.

주2) 배당금 수령액은 마바(주)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당해연도에 확정되어 수령한 배당금 금액이다. 동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 소재지국에서의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3)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조세조약에는 해당국간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4) 회사는 동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국별한도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 법**

**4/16**

**제1교시**

**(물음 5)**

바사(주)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04사업연도에 회사가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상 보유자산의 감가상각명세는 아래 1과 같다. 회사는 감가상각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하였다.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답안은 과목, 세무조정내용(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 순으로 작성하시오.

1. 2004년 세무조정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조정내역

(단위 : 원)

|  |  |  |  |
| --- | --- | --- | --- |
| 구분 | 건물 | 기계장치 A | 기계장치 B |
| 취득일 | 2000. 4. 1 | 2000. 5. 1 | 2002. 7. 1 |
| 신고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율법 | 정율법 |
| 취득원가 | 3,000,000,000 | 1,250,000,000 | 800,000,000 |
| 기초  감가상각충당금 | 600,000,000 | 900,000,000 | 550,000,000 |
| 기초감가상각비  부인액누계 | 0 | 27,000,000 | 34,000,000 |
| 당기  감가상각비 | 150,000,000 | 100,000,000 | 65,000,000 |
| 당기감가  상각범위액 | 150,000,000 | 97,000,000 | 73,000,000 |
| 신고내용연수 | 20년 | 10년 | 10년 |

2. 당해연도 중 기계장치(중고자산 아님) 취득 및 감가상각내역

(단위 : 원)

|  |  |  |  |
| --- | --- | --- | --- |
| 구분 | 취득일 | 취득금액 |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
| 기계장치 C | 2005. 4. 2 | 1,000,000,000 | 259,000,000 |
| 기계장치 D | 2005. 8.16 | 400,000,000 | 51,800,000 |

3. 회사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건물에 대하여 150,000,000원, 기계장치 B에 대하여 6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4.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고정자산처분손실 2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기계장치 A에 대한 것으로 실제로는 아직 폐기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회사는 동 기계장치를 다음 사업연도 중에 폐기할 예정이다.

5. 내용연수 10년에 대한 정율법 상각율은 0.259이다.

**(물음 6)**

사아(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고자 한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 감면대상소득을 구하시오.

1. 손익 관련 자료

매출액 : 5,000,000,000원

(서비스업 매출액 1,000,000,000원 포함)

매출원가 : 3,400,000,000원

(서비스업 매출원가 600,000,000원 포함)

판매비와 관리비 : 900,000,000원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 150,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10,000,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000원 포함)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 170,000,000원

(유가증권처분손실 70,000,000원, 고정자산처분손실 30,000,000원 포함)

2. 세무조정 내역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 25,000,000원

접대비 부인액 : 15,000,000원

종업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액 : 3,000,000원

**(물음 7)**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차(주)의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12. 31)의 자료이다. 자차(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A(주)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아래 자료에 의해 질문에 답하시오.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말 것)

1. 자차(주)와 A(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 직전 각 회사의 1주당 평가액과 발행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자차(주) | A(주) |
| 1주당 평가액 | 35,000원 | 5,000원 |
| 발행주식 총수 | 20,000주 | 20,000주 |
| 1주당 액면가액 | 15,000원 | 3,000원 |

**세 법**

**제1교시**

**5/16**

2. 자차(주)의 주주인 갑(지분율 40%)과 A(주)의 주주인 을(지분율 60%)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주주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

3. 갑은 자차(주)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에, 을은 A(주)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취득하였다.

4. 자차(주)는 합병의 대가로 A(주)의 주주들에게 A(주)의 주식 4주당 자차(주)의 주식 1주를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1)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 간에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한 자를 명시하고 분여된 이익을 계산하시오.

2) 합병시점에 주주 갑과 주주 을이

가. 모두 개인인 경우 각각의 입장에서 자본거래를 통한 분여이익에 따른 세무처리 내용(분여에 따른 이익 금액 포함)을 설명하고,

나. 모두 법인인 경우 각각의 입장에서 자본거래를 통한 분여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3)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주주 을(법인으로 가정한다)의 합병시점의 의제배당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4) 합병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주주 을(법인으로 가정한다)이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신주의 50%를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세 법**

**6/16**

**제1교시**

**[문제2] (25점)**

<참고자료>

① 근로소득공제액

|  |  |
| --- | ---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8%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80만원+(과세표준-1,000만원)×17%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590만원+(과세표준-4,000만원)×26% |
| 8,000만원 초과 | 1,630만원+(과세표준-8,000만원)×35% |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55% |
| 50만원 초과 | 275,000+(근로소득산출세액-500,000)×30% |

④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  |
| --- |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9%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90만원+(과세표준-1,000만원)×18%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630만원+(과세표준-4,000만원)×27% |
| 8,000만원 초과 | 1,710만원+(과세표준-8,000만원)×36% |

**(물음 1)**

다음은 거주자 H씨(35세 남성)의 2005년도 귀속 소득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각각의 질문은 상호 독립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언급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증빙은 모두 제출된 것으로 한다. 계산내역을 반드시 제시하시오.

<자료 1>

H씨의 2005년 귀속 금융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소득내역 | 소득금액 |
| 은행정기예금이자 | 80,000,000원 |
| 국외배당 | 30,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18,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0원 |

주) 국외배당은 원천징수 되지 않았음.

<자료 2>

H씨는 서울(주)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은 H씨의 2005년 귀속 근로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1. 급여 등 관련 자료

① 급 여(2,000,000원×12개월) 24,000,000원

② 상 여 6,700,000원

③ 식 대(150,000원×12개월, 음식물 미제공)1,800,000원

④ 사용자부담분 건강보험료 1,000,000원

⑤ 자가운전보조금(300,000원×12개월) 3,600,000원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받은 보조금임)

⑥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4,000,000원

(2005년 사업연도분으로 잉여금처분 결의일은 2006. 2. 15임)

**세 법**

**제1교시**

**7/16**

2. 서울(주)가 2005년도에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연간 총액은 800,000원이며, H씨의 2005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은 9,000,000원이다.

3. H씨는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다음 항목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확정신고시 추가소득을 신고하면서 필요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전자신고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본인, 2004. 12. 1 ～ 2005. 11. 30의 사용액) 20,000,000원 :

신용카드 사용액은 물품구입비 12,000,000원, 중고승용차 구입비 5,000,000원, 지방세 납부액 1,000,000원, 직불카드사용 물품구입비 2,000,000원으로 구성된다.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없다.

② 장남(7세)의 입원치료비 3,000,000원 :

2005년 중 다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없다.

③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1,00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 포함 5인이었음), 일시재산소득금액 10,000,000원이 누락되었다.

<자료 3>

H씨는 등기된 토지 A를 2005년 3월 10일에 양도하였는데, 토지 A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A의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450,000,000원, 실제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다. 동 토지는 2003년 2월 1일에 배우자 K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350,000,000원이고 시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H씨는 동 토지에 대해 2003년 중 법 소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배우자 K씨는 동 토지를 2001년 10월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는 360,000,000원, 실제취득가액은 400,000,000원이다.

3. 토지 A 취득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의 합계는 27,000,000원이다.

4. H씨는 토지 A를 제외하고는 2003년 2월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며, 2003년 중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3억원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이다.

<자료 4>

H씨는 2005년 9월 중 토지 B(등기, 보유기간 5년 4개월)와 주식 C(중소기업 주식, 보유기간 1년 2개월)를 순서대로 양도하였다. 토지 B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80,000,000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50,000,000원이고, 주식 C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40,000,000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30,000,000원이다. 토지 B와 주식 C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료 1>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 중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공제액은 9,000,000원으로 가정한다.

2) <자료 2>의 1, 2를 이용하여 2005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할 소득세를 계산하시오.

**세 법**

**8/16**

**제1교시**

3) <자료 2>의 1 ～ 3을 이용하여 200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할 소득세를 계산하시오.

4) <자료 3>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토지 A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5) <자료 4>를 이용하여 토지 B와 주식 C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토지 A의 양도소득예정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물음 2)**

전문직 종사자인 거주자 L씨의 2005년 소득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거주자 L씨의 2005년도 총급여액은 45,000,000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은 기본공제 5,000,000원과 표준공제뿐이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L씨의 현재 직장에서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2. 2006년 4월 15일에 거주자 L씨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2005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추가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단, 이들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L씨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어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  |  |
| --- | --- |
| 내 역 | 금 액 |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5,000,000원 |
|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학기 동안의 A대학 시간강사료 | 3,000,000원 |
| 고용관계 없는 B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받은 강연료 | 8,000,000원 |
| 업무와 관계 없이 잡지에 원고를 게  재하고 받은 원고료 | 2,000,000원 |

1) 2006년에 추가로 확인된 거주자 L씨의 2005년 소득 중 2005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 가능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2) 거주자 L씨가 위 1)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2005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시오.

3) 거주자 L씨가 위 1)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2005년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시오.

**세 법**

**제1교시**

**9/16**

**[문제 3] (20점)**

**(물음 1)**

K씨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던 개인사업자인데, 2004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에 미달함에 따라 2005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거래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자신고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2005년 제2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매출액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중 11,000,000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것이다. 단, 제품의 인도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M씨에게 이루어졌으며 M씨는 6,600,000원은 과세사업에, 4,400,000원은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② 수출액 20,000,000원

③ 단골고객에 대한 증정품의 원가 4,000,000원

(시가 8,000,000원, 부수재화 아님):

동 증정품 원가 중 1,00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④ 국내매출액은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것이다.

2. 2005년 제2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2,400,000원이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20%이다.

3. 2005년 7월 1일 현재의 재고현황(취득가액 기준)

① 상품 10,000,000원

② 기계장치 5,000,000원

(2003년 9월 1일 취득)

③ 건물 100,000,000원

(2003년 8월 1일 취득)

1) K씨가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하였다고 가정할 때, 200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차가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2) K씨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다고 가정할 때, 2005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차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세 법**

**10/16**

**제1교시**

**(물음 2)**

2005년 제1기에 다음과 같이 독립된 ‘과세사업자’ A, B, C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사업자 A(과세) → 사업자 B(과세) → 사업자 C(과세) → 최종소비자) 과세재화가 있다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단위 : 원)

|  |  |  |  |
| --- | --- | --- | --- |
| 구 분 | 사업자 A  (과세) | 사업자 B  (과세) | 사업자 C  (과세) |
| 매 출 액 | 5,000,000 | 8,000,000 | 10,000,000 |
| 매 입 액 | 0 | 5,000,000 | 8,000,000 |
| 부가가치 | 5,000,000 | 3,000,000 | 2,000,000 |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각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위의 자료에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위 사례에서 사업자 B가 면세사업자(사업자 A(과세) → 사업자 B(면세) → 사업자 C(과세) → 최종소비자)이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사업자 C에게 전가하고, 사업자 C는 부가가치 2,000,000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사업자 B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비해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계산하시오.

2) 사업자 B의 과세⋅면세 여부 외의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두 가지 거래유형이 시장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두 가지 거래유형에서 사업자 C의 소비자 공급가액을 같게 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위 1)에서 사업자 C에게 공제해 주어야 할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세 법**

**제1교시**

**11/16**

**(물음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KS의 2005년 제1기 확정신고를 위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 본사 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사용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구 분 | 2004년 제1기 |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
| 과세사업 | 97%(90%) | 93%(85%) | 70%(80%) |
| 면세사업 | 3%(10%) | 7%(15%) | 30%(20%) |

주) 괄호 안은 본사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임.

(주)KS는 기계장치와 본사 건물을 2004년 5월 20일 취득하였는데, 취득원가와 이후 과세기간별 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원가  (2004년  제1기) | 시 가  (2004년 제2기) | 시 가  (2005년 제1기) |
| 기계장치  본사건물 | 20,000,000  300,000,000 | 15,000,000  250,000,000 | 10,000,000  200,000,000 |

단,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양수(+)로, 감소시키면 음수(-)로 표시하시오.

1) (주)KS가 위의 기계장치와 본사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2004년 제1기 확정신고시 기계장치와 본사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시오.

2) 위 1)에서 취득한 기계장치 및 본사 건물과 관련하여 2004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시오.

3) 만약 위의 기계장치와 본사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2003년 제2기 중에 취득한 후 2004년 제1기 중에 면세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면, 2004년 제1기 확정신고시 기계장치 및 본사 건물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시오. 단, 취득원가는 2004년 제1기의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4) 만약 위의 기계장치와 본사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2003년 제2기 중에 취득한 후 2004년 제1기까지는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고 2004년 제2기 중에 면세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면, 기계장치 및 본사 건물과 관련하여 2004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시오.

5) 위 1)에서 취득한 본사 건물을 2005년 제1기 중에 시가로 공급한 경우의 납부세액 증가액과, 위 4)에서 취득한 본사 건물을 2005년 제1기 중에 시가로 공급한 경우의 납부세액 증가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단, 각각의 경우 본사 건물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세법상 관련된 절차는 모두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가정한다.

**[문제4] (15점)**

**(물음 1)**

실질과세원칙과 관계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 원칙과 완전포괄주의증여개념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현행 세법에 규정된 내용 중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들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음 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예외항목으로 법령에 규정된 것 중 네 가지를 열거하시오.

**(물음 3)**

거주자 갑은 2005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주거용 아파트 한 채를 서울시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중 부동산 보유로 인해 갑에게 부과되어지는 세목, 과세주체, 납기를 설명하시오. 단,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은 고려하지 마시오.

**세 법**

**12/16**

**제1교시**

**- 끝 -**

여 백

**세 법**

**제1교시**

**13/16**

여 백

**세 법**

**14/16**

**제1교시**

**세 법**

**제1교시**

**15/16**

여 백

여 백

**세 법**

**16/16**

**제1교시**